

농산물도매시장 종합감사
[2016. 4. 4 ~ 4. 8]

감사결과 공개문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중도매인 보증금 납부 업무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에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에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32조(보증금 납부)의 규정에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시장 법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중도매업 허가수리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매업 허가신청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 도매시장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포항청과 이은자는 감사일 현재까지 보증금납부 및 담보제공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 △△△과 ○○○ △△△은 허가일자로부터 ★~★개월이 지체한 후 보증금 납부 및 담보제공내역을 제출하였는데도 중도매인 허가시 보증금 납부 및 담보 제공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중도매인 보증금 납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보조경매 참가자 결격사유 미조회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1항에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또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중도매업의 허가 등)제1항에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개정 2014.11.4>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5항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제31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
7.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접수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하고 승인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매인(△△△외 ★명)이 신청한 보조경매 참가자(△△△외 ★명)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보조경매 참가자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보조경매 참가자 승인시 결격사유를 조회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감독 소홀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 및 제61조에 따른 안정성조사, 표준규격품 및 인증품 사후관리 등 도매시장 내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을 ○○○○○○○○ 경북○○ ○○○○사무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에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2조 및 104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으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06조(시설변경, 전대의 금지)에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에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을 지정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7조(시설반환)에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부동산과 그 종물은 공유재산의 범위에 들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시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유재산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반환사유가 발생할시 필요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반환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 경북○○ ○○○○○사무소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 ××월 ××일 ○○○○○○○○○ 경북○○ ○○ ○○사무소의 운영 중단에 따라 ○○○○○○○○○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 ○○○ ○○○ ○○○에 사무실을 반환(이전)토록 즉시 조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까지 가○○○ ○○○ ○○○ ○○○ 농산물도매시장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 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불법행위 고발센터 미설치 및 위원회 운영 소홀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공유재산인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도매시장 내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2조에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같은 조례 제99조에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법 제7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분쟁,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20조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 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시장관리위원회와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은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고,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 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시장관리위원회와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시기 바라며,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 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서 작성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에 의하면 계약 및 예

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또는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그 밖의 사항)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경우 공사(수선) 및 용역계약시 별지제50호 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사용하고 중앙부분에 있는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함”에 날인하고 이면 승낙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는 등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 ○○○○○○ 교체 외 ★건에 대한 계약시 별지 제50호 서식의 이면의 승낙사항(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등)과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농산물도매시장 ○○○○○○ 용역과 농산물도매시장 ○○1동 ○○○○ ○○○ 청소 용역은 별지 제45호 서식(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계약의 이행기간, 지체상금 등 계약과정 진행상황을 알수 없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 ① 계약서 작성시 관련법령 및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집행 품의 부적정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지방재정법」 제67조(지출원인행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 처리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예산 집행 품의 후 신용카드 사용 및 지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추정금액별로 본청, 제1관서, 기타관서 등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 품의 생략)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집행품의 → 신용카드사용 →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입금 순으로 그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사무실소모품 구입 및 직원 사기진작 급식제공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 ○○○ 구입 외 ★건 ###,###원에 대하여 사전 품의를 하지 않고 카드 사용일 이후에 집행품을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예산집행시 예산집행품의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소홀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일 기준으로 총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카드결재계좌잔액 ###,###원을 즉시 세입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계좌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조경관리와 농산물도매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사용부서 1부, 근로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 ~ 20××.××.××.기간중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해당기간 작업 후 인부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채용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을 서면명시)에 명시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검사결과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묻고답하기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홈페이지 관리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 결과를 20××.×월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한번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알림마당의 ○○○○와 ○○갤러리는 단 한건의 게시물도 찾아볼 수 없으며, 묻고답하기는 20××.××.×.에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않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소관사무 홍보, 최신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거래정보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홈페이지에 경락가격, 현황분석 등의 유통정보를 출하자, 소비자, 유통종사자 등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정보분산시스템의 연중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행정전산망 세부실천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유지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추정금액 산정시 취득금액의 총액에 해당 보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정가격 산출시 부가세를 이중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1장 10절(정보화사업)에 명시된 예산안 작성지침에는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기존 유지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 하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에 유지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컴퓨터 유지보수비 : 취득원가(부가가치세 제외) × 8%이하(년) × 1.1(부가가치세)

※ 취득원가(순수 물품취득가격) : 구입금액 - (조달수수료 + 설치비 + 부가세)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거래정보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산출시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출하고 부가세를 다시 합산하여 부가세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유지보수

금액을 총 #,###,###원 과다산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유지보수산정시 부가세를 이중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추정가격 산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서류 접수처리 누락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에 의하면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소요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년 ○○○○○○허가신청 ★건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접수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민원서류를 일반문서로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민원서류 접수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농산물도매 시장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는 일반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사용료 예정가격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준용 규정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건축물)으로 예정가격을 적용하여야 하였다.

1)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부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따른 평가액 #,###,###원을 사용료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원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최고가격 응찰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입찰 예정가격 #,###,###원이 과소 적용되었고, 불필요한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 ①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개 선 요 구

제 목 도매시장시설 관리비 징수규정 불합리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도매시장사용료와 그 밖에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의 부과·징수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2조, 제83조, 제105조에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부과·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부기한이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5조 제5항에서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도매시장의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자치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가산금(연체금) 내용을 규정하여 해당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징수 및 체납에 따른 행정상 강제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다.²⁾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감사일 현재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도매시장 사용료 강제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제처 의견11-0290, 2011. 12. 22. 참조

감사담당관 주의요구

제 목 공유재산 평가 및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공유재산 재산평가액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제외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감가상각에 의한 방법으로 건물평가액을 산출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공유재산 재산평가액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제외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감가상각에 의한 방법으로 건물평가액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공유재산 사용료 **##,###,###**원이 과소 부과·징수 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과소부과한 공유재산 사용료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은 관련조례를 준수하여 정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과소부과한 공유재산 사용료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은 관련조례를 준수하여 정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시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 ○○○ ○○○ 보수공사’를 △△건설(주)와 계약(20××.××.××)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 ①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관 계 부 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용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553호 2012.8.22.)에 의거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기타 관련서류와 수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5호,2016.02.11.)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 ○○○○ 교체공사’ 외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의 내역서도 없는 견적서등을 참조한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설계도서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시 지방계약법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는 등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